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

구 분	주요 내용	비고
안 제5조 (지역계획의 수립 등)	· 조 제명 및 근거 조항 정비 · 용어 정비 (인터넷 홈페이지 → 누리집)	· 적정 (상위법 개정내용 및 법령 정비기준 반영)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,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다만,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및 주민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참고]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(개정안)

제5조(지역계획의 수립 등) ① 군수는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고성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~ ③ (생략)

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·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, 군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7. 12. 원안가결 함.